

의안번호	제536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23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3년 8월 26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536
----------	-----

제출연월일 : 2013. 8. 26.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가칭)삼원유치원 설립예정지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목적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위치 변경)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가칭)삼원유치원	토지	가칭)삼원유치원 설립부지 위치 변경 (삼원초 부지 → 현 국원고 유희부지)	1,782	3,247,000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붙임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기정계획			변경계획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취득합계	26	5,238,617.50	99,688,908			318,000	26	5,238,617.50	100,006,908	
	계	토지	14	5,176,620.00	23,214,956				14	5,176,620.00	23,214,956
		건물	12	61,997.50	76,473,952			318,000	12	61,997.50	76,791,952
		기타									
		합계									
	1. 매입	토지	7	94,916.00	13,621,249				7	94,916.00	13,621,249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8	5,086,682.00	11,793,707				8	5,086,682.00	11,793,707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2	61,997.50	76,473,952			318,000	12	61,997.50	76,791,952	
기타											
취 득 분	처분합계	9	378,289.09	30,253,519				9	378,289.09	30,253,519	
	계	토지	6	370,162.00	28,583,384				6	370,162.00	28,583,384
		건물	3	8,127.09	1,670,135				3	8,127.09	1,670,135
		기타									
		합계									
	4. 매각	토지	3	34,596.00	8,970,952				3	34,596.00	8,970,952
		건물	2	1,707.85	279,175				2	1,707.85	279,175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3	335,566.00	19,612,432				3	335,566.00	19,612,432
건물		1	6,419.24	1,390,960				1	6,419.24	1,390,960	
기타											

2. 취득 대상 재산 목록

① 가칭)삼원유치원 설립부지 위치 변경

□ 당초취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가칭) 삼원유치원	토지	충주시 봉방동 11-1	0.00	0	상반기	가칭)충주삼원유치원사 신축	교육감	도면1
	건물	(현삼원초)	1,782.00	2,929,000				
합 계			1,782.00	2,929,000				

□ 변경취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취 득 시 기	변경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가칭) 삼원유치원	토지	충주시 봉방동	0.00	0	2014. 하반기	가칭)삼원유치원사 설립 부지 위치 변경 - 단설유치원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교육감	도면1
	건물	618-2번지 외2필지 (현국원고)	1,782.00	3,247,000 (20131회추경 시설비 증액)				
합 계			1,782.00	3,247,000				

□ 변경사유

- 가칭)삼원유치원의 설립여건 변화와 단설유치원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현 국원고 유휴지로 변경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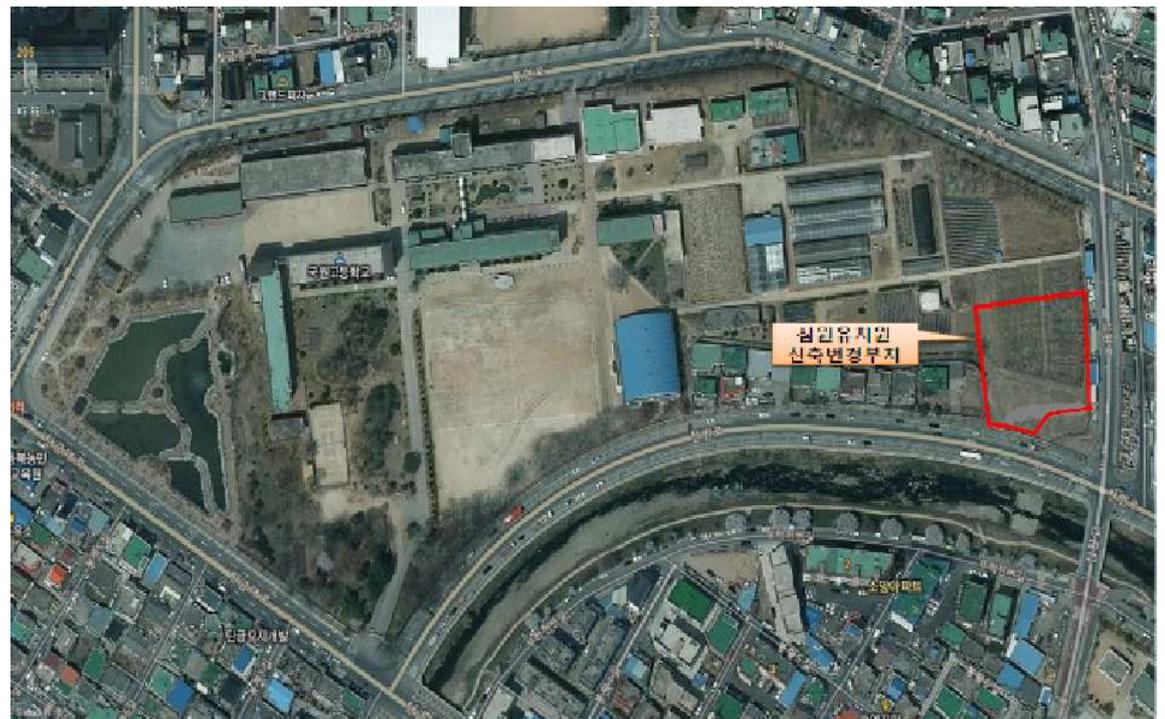
도면 1 : 가칭)삼원유치원사 설립 부지 변경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가칭)삼원유치원 교사 신축	건물	충주시 교현동	681-2외 2필지	철근 콘크리트	1,782	3,247,000 [20131회추경 시설비 증액 (318,000천원)]	현)국원고 유휴지로 설립 부지 변경 - 단설유치원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변경 전



변경 후



관계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